

교무처 운영지침	청암대학교 집중이수제 운영지침	제정일자	2020.02.18
		최종개정일자	
		관리담당	학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암대학교 학칙 제9조의2 따른 집중이수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집중이수제”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별 교과목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제반 수업의 형태 및 제도를 말한다.

제3조(개설대학 및 학과) 개설교과목은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으로 하되, 집중이수제 적용 운영 교과목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 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집중이수 신청 및 절차) ① 집중이수를 희망하는 교과목의 담당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특별학기에 개설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1. 집중이수제 개설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수요를 사전 파악한다.
2. 집중이수제 적용 교과목 및 담당 교원은 학과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3. 집중이수제 교과목 신청은 개강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와 관련 첨부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4. 총장은 집중이수제 교과목 개설을 수강 신청 전까지 허가한다.

제5조(교과목 개설 등) ① 평일 주·야간시간에 한하여 개설가능하며, 주말 수업의 개설은 제한한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수강대상 학생이 동의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전공필수과목은 모든 수강대상 학생의 동의를 얻어 개설할 수 있다.
- ③ 집중이수제 개설교과목 수업 기간은 학기 12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④ 교원의 집중이수제 개설 및 참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제한한다.(공통강의 제외)
 1. 집중이수제 교과목 수업의 경우 학기당 최대 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2. 집중이수제 교과목 수업의 경우 1일 6시간(이론을 포함한 실험·실습시간의 경우 최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식사시간 1시간은 제외
 3. 주말 수업 또는 학생들의 수강신청 중복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⑤ 집중이수제 운영 포기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손된 수업은 보강하여야 한다.
- ⑥ 직무능력평가 학사일정에 따른다.
- ⑦ 집중이수 교과목 개설의 목적인 각 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총장은 개설을 제한 할 수 있다.
 1. 연속적인 수업으로 집중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수업
 2. 집중수업으로 학습의 창의적 수업과 효율성을 높이는 수업

제6조(학적변동에 따른 성적처리 및 환불처리 등) ① 휴학 등 학적변동에 의한 성적처리는 수업 일수를 산정하여 처리한다.

② 환불처리는 「학사내규」제11조의 3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기준에 따른다.

제7조(그 밖의 사항) 집중이수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혁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20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